
'14년 농림축산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운영지침

2014. 2



농림축산식품부
농촌복지여성과

목 차

I. 배 경	1
II. 개 요	2
1. 기본 방향	2
2. 농림축산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조건	3
3. 농림축산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관리	5
[붙임 1] 농림축산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조건	9
[붙임 2] 취약계층 범위	12
[별지 1] 농림축산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	14
[별지 2]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	15
[별지 3] 사회적 목적 실현 확인서	16
[별지 4] 농림축산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변경신청서	17
[별지 5] 농림축산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	18
[별지 6]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	19
[별지 7] 지정 신청기관 현장 조사표	20

□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정('07) 및 「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」 마련('11)을 통해 사회적기업 확산 기반 마련(고용부)

○ 사회적기업 지원 제도 내실화를 위해 지역형('10) 및 부처형('11)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도입

* '13.12월 기준, 1,537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(부처형 135, 지역형 1,402)

◇ 중앙단위 사회적기업 확산 지원 추진

-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제 운영
- 사회적기업과 유사한 지역개발사업 참여 기업(농촌공동체회사 등)을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간주하고, 사회적기업 전환을 적극 지원

* 제89차 국민경제대책회의 겸 제11차 국가고용전략회의 ('11.6.9)

□ 농촌은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증가로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내는 경향

○ 다만, 사회적기업(고용부) 인증요건 중 일부*는 농촌지역에 사회적기업 진입 장벽으로 작용, 활성화에 한계

* 취약계층 고용유지 기간이 신청 전 6개월로 농업의 계절 고용과 괴리

○ 농촌 지역 고용 창출,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농촌공동체 회사를 육성('11~)하고 있으나, 사회적기업과 연계 부족

□ 농촌 특성을 반영*하고, 우리부 지원 정책과 연계된 농림축산 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 필요('12.2월 도입)

* 부처형 지정제는 최소 요건을 제외하고 부처가 자율적으로 수립 가능

○ 고용부 가이드라인 변동사항 등을 우리부 운영지침에 반영 하되, 농업·농촌에 특화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추진

Ⅱ 개요

1 기본 방향

< 농림축산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>

◇ 농촌지역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,

⇒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·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은 자

□ (지정) 농림축산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정체성 확보 및 농업·농촌의 특성 반영을 위해 지정조건 차별화

○ 지정 조건에 농촌 지역을 추가하고, 지정절차 및 구비서류 간소화로 고객 눈높이 맞춤서비스 실현

□ (지원) 농업·농촌의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비사회적기업 육성기관(고용부 지정) 등과 연계

○ 인증 심사시 농업의 계절적 수요가 반영되어 심사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등

□ (육성) 관련 정책 간 연계로 농업·농촌분야 사회적기업 육성

○ 농촌공동체회사 중 사회적기업 인증을 희망하는 사업체를 발굴,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 인증 지원

○ 취약계층 고용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을 주로 하는 농업·농촌 분야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인증 지원 등

*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고용노동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과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기준(업무매뉴얼)에 따름

2

농림축산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조건

* 상세내용은 붙임1. <농림축산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조건> 참조

□ 조직형태

-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
 - * 민법상 법인·조합, 상법상 회사·합자조합,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익법인,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비영리민간단체,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,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등

□ 유급근로자 고용

- 4대 보험 중 건강보험에 가입한 유급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·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3개월 이상 수행하고 있는 기업
 - 자원봉사 활동은 영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
 - * 영업활동 기간은 수익사업개시 신고일로부터 기산하며 매출이 발생해야 함

□ 사회적 목적 실현

- 농촌지역 취약계층에 대하여 일정비율* 이상 고용하거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
 - * 사회적 목적에 따라 취약계층을 20~30% 이상 고용

□ 사회적 목적을 위한 재투자

- 이익잉여금의 2/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
 - * 대상: 상법상 회사 및 조합원의 이익 등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 하는 농업법인, 협동조합 등
- 청산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2/3 이상을 다른 사회적 기업 및 공익적기금 등에 기부

□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함

- 법인 또는 단체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농촌에 소재하고, 농촌에 거주 또는 주소를 둔 자를 고용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것

[참고]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인증(지정)조건 비교

구분	사회적기업	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	농림축산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
인증(지정)기관	고용노동부	광역시방자치단체	농림축산식품부
①조직형태	○ 민법상법인·조합,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등 ○ 상법상 회사·합자조합,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○ 대통령이 정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조직형태		
②유급근로자 고용	○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		
	※4대보험(건강,연금,산재,고용보험) 가입필수		※건강보험가입필수
③사회적 목적 실현	○사회서비스제공형 : 취약계층 수혜자 30%이상		좌동, 농촌지역의 취약계층을 수혜자로 하거나 고용
	○일자리제공형 : 취약계층 고용 30%이상 ※5인이상 고용필수		
	○지역사회공헌형 : 취약계층 고용비율이나 수혜자 비율이 20%이상 ※지역사회공헌증명필요		
	○혼합형 :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수혜자 비율이 각각 20%이상		
	○기타형:육성위원회심의	○기타형:자치위원회심의	○기타형:심사위원회심의
④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	○위원회, 이사회 등에 수혜자, 근로자 참여 ※정관, 회의록 기재 및 공증	- 해당 없음 -	
⑤영업활동을 통한 수익	○수입이 노무비의 30%이상 ※세무/회계기관 확인	- 해당 없음 -	
⑥정관규약구비 및 기재사항준수	○법정사항의 조건구비 : 목적,사업내용,명칭등	- 해당 없음 -	
⑦사회적 목적 재투자	○배분 가능한 이윤과 청산재산의 2/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		
※지역 조건	- 해당 없음 -		○농촌지역 대상
※증명서류의 조건	신청일 직전 6개월	신청일 직전 3개월	

3**농림축산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관리****□ 지정 공모 및 신청접수**

- (공모방법) 농림축산식품부 및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지원 기관, 각 시·도 및 시·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
- (공모시기 및 횟수) 연 1회 이상
- (신청 및 접수) 지정신청서(별지1),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(별지2) 및 관련서류를 해당 시·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
- (심사준비) 농림축산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자 현장 실사 후 검토 보고서 작성

□ 심사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심사

- (심사위원회) 농촌정책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10명으로 구성
 - 위원 : 관계 공무원, 학계·경영계, 민간 전문가 등
 - * 농림축산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위원회는 기 구성('12. 6.)
 - 임무 : 농림축산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 등
- (심사방법)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, 필요시 서면심사 가능
- (정족수)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
- (소위원회)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심사위원 2인을 포함한 5인 내외의 예비사회적기업 관계자로 소위원회 구성·운영
 - 임무 : 농림축산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전 심사
- (심사기준) 사업내용의 우수성, 사업기관의 견실성, 지속적 고용 창출 가능성, 농촌 복지서비스 제공 및 농촌 지역성 등

□ 지정 방법 및 기간

- (지정기관수) 지정조건에 부합할 경우 제한 없음
- (통보)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림축산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결과를 고용부 장관 및 시·도지사에게 통보
- (지정기간)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지역개발사업(농촌 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,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, 마을기업 등)에 참여한 경우에도 해당사업 참여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

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 (예시) ■

	'11년	'12년	'13년	'14년	'15년	'16년
기업 A	※			○	○	
기업 B	※	※		○		
기업 C		※		○	○	
기업 D		※	※	○		
기업 E			※	○	○	
기업 F				○	○	○

※ : 지역개발사업 참여기간 ○ :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

- * 기업 A, 기업 C, 기업 E와 같이 1년간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지정, 지원을 받은 기업이 '14년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기간은 2년임
- * 기업 B, 기업 D와 같이 2년간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지정, 지원을 받은 기업이 '14년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기간은 1년임

□ 지정제한

- “농림축산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”으로 지정된 후 지정기간 이내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지 못한 기업
- (예비)사회적기업 지정이 취소된 경우, 취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

□ 지정변경·취소 및 지정종료

- (지정변경) 중요 지정내역(사업내용 변경 등)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유발생 1개월 이내 신고(승인사항)하고, 변경신청서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승인 결정
 - 단, 대표자, 소재지 변경 등의 경미한 사유는 승인 불필요(신고사항)
- (지정취소) 허위·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경우 또는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지원약정이 해지된 경우, 지정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(시정조치 후 기한내 시정하지 못할 경우)
 - 지정취소 시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이행
- (지정종료) 지정기간 중에 ‘사회적기업 인증’을 받은 경우 또는 지정서를 자진 반납한 경우, 지정기간이 만료된 경우, 폐업 및 도산 등으로 인해 사실상 운영되지 않은 경우(국세청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등으로 확인)는 지정종료

□ 예비사회적기업가 교육 및 모니터링

- (교육) 신규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 또는 임원은 신규 지정 후 3개월 이내에 사회적기업에 관한 교육을 수료하여야 함
 - (교육내용) 사회적기업 육성정책, 인증 절차·방법, 각종 지원사업 및 관련 지침 등
 - (교육장소)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지원 기관,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, 권역별 지원기관 및 고용노동부 교육위탁기관 등
- (모니터링) 연 1회 이상 모니터링 실시
 - 지정요건의 유지여부,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에 따른 계획의 이행여부, 대표자가 개인사업자이거나, 타법인 등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실질적인 독립운영여부에 대한 확인 등

붙임 1 농림축산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조건

*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규정에 따름

□ 조직형태

- 민법상 법인(사단법인·재단법인 등)·조합
- 상법상 회사(주식·유한·합자·합명회사), 합자조합,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
- 비영리 단체 등

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시행규칙상 비영리 단체의 정의

-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익법인
-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법인
-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생활협동조합
- 「협동조합기본법」에 따른 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, 연합회
-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

- * 사업단은 불가능하나 정관, 등기상으로 모법인과 분리되어 있고 회계, 인사, 의사결정이 독립 운영되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가능
- * 증명서류 : 법인설립허가증,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(주무부처 또는 시·도지사 허가(등록)날짜 기재), 법인등기부등본 중 택일, 사업자등록증 필수 제출
- *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가족기업 여부 확인

□ 유급근로자 고용

- 유급근로자 고용 : 4대 보험 중 건강보험에 가입한 유급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
(단, 일자리제공형은 유급근로자 5인 이상 고용)
- 영업활동 : 재화, 서비스 등을 판매·제공하는 행위를 할 것
 - * 증명서류
 - 유급근로자 고용 : 유급근로자 명부, 건강보험가입확인서, 임금대장은 필수적으로 제출
 - 영업활동 : 자체 결산서 또는 재무제표 중 택일

□ 사회적 목적 실현

사회적기업 유형	사회적 목적 실현 요건
• 사회서비스제공형	• 농촌지역 취약계층 서비스제공비율이 30% 이상
• 지역사회공헌형	• 농촌지역 취약계층 서비스제공비율이 20%(지역사회공헌 실적제출)이상 또는 농촌지역 취약계층 고용비율 20% 이상
• 일자리제공형	• 농촌지역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% 이상 단, 유급근로자 5인 이상 고용
• 혼합형	• 농촌지역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서비스제공비율이 각각 20% 이상
• 기타형	• 심사위원회에서 판단

- 사회적 목적 실현 형태에 따라 <별지 3> 사회적 목적 실현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함
- 농촌지역 취약계층이라 함은 농촌지역 거주자 중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을 말함(붙임 2 참조)

□ 사회적 목적을 위한 재투자

-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에서 총지출금을 공제한 이익잉여금의 2/3 이상은 다음의 사회적 목적에 사용
 - 설비 재투자·기술개발 등 사업확장을 통한 추가 인력 고용
 - 취약계층에 대한 봉급 인상으로 근로여건 개선(복리후생 등)
 -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위한 공익사업 및 기부, 지역사회 환원
 - 기타 사회적 사용
- * 수익을 특정 종교조직으로 기부하거나, 선교 사업에만 사용하는 경우는 '사회적 재투자'라고 볼 수 없으며, 대표·임원·직계존비속에 대한 성과급 지급은 사회적 목적으로 불인정

○ 상기사항 정관 또는 규약에 기재

- * 증명서류 : 정관 또는 규약 사본
- * 정관 또는 규약작성의 예

제○조 (이익금의 사회적 목적 사용)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에서 총지출금을 공제한 이익잉여금의 2/3 이상은 다음의 사회적 목적에 사용한다.

- 설비재투자·기술개발 등 사업확장을 통한 추가 인력 고용
- 취약계층에 대한 봉급 인상으로 근로여건 개선(복리후생 등)
-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위한 공익사업 및 기부, 지역사회 환원
- 기타 사회적 사용

제○조 (청산시 잔여재산의 처분) 사업 및 법인 해산시 부채를 변제하고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2/3 이상을 다른 사회적 기업 및 공익적기금 등에 기부한다.

□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함

○ 법인 또는 단체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농촌에 소재할 것

- * ‘농촌’의 정의는 『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』 제3조5호에 따름

「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
 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5. ‘농촌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.
 가. 읍·면의 지역
 나.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어업, 농어업 관련 산업, 농어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

○ 농촌에 거소(또는 주소)를 둔 유급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할 것 (일자리제공형의 경우 농촌지역 유급근로자를 30% 이상 고용)

○ 농촌에 거소(또는 주소)를 둔 수혜자가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에 따라 20~30% 이상일 것(일자리제공형 제외)

- * 증명서류 : 법인등기부등본, 주민등록등본, 주민등록증 사본 등

붙임 2 취업계층 범위

□ 취업계층의 구체적 기준

-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2조 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저소득자, 고령자 등을 말함

〈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〉

"취업계층"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,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〈 동법 시행령 제2조 2호 〉

1.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
2.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*
3.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
4.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
5.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「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
6.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
7.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
8. 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
9.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
10.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
1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- 가. 「범죄피해자 보호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법」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
 - 나.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
12.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「고용정책 기본법」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(이하 "정책심의회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취업계층으로 인정한 사람

* 인구, 취업자 구성 등을 고려,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

□ 취약계층 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

○ 취약계층 근로자

저소득층	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·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(세무서)·수급자증명서·차상위계층확인서·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 통보서·건강보험료납입고지서(납부영수증)·소득금액증명(국세청)·급여 명세표 등
장애인	복지카드·상이군경회원증·장애인증명서
고령자	주민등록번호(주민등록번호, 주민등록증·운전면허증 사본 등)
기타	한부모가정증명서, 탈북자증명서(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) 여성가장 및 청년 실업자(고용보험상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자 기준에 준하여 확인) 장기실업자(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담당자 고용보험전산망 및 민간취업알선기관의 구직등록일 이후 실업기간 확인) 결혼이주 여성(외국인등록증상 F-2, 국적취득에 의한 신규등록이 표시된 주민등록등본, 기타 외모, 언어, 주변인 확인 가능) 출소자증명서(출소자) 등

○ 위 기준 이외 사회서비스 수혜자로서의 취약계층

불특정 다수대상	조손가정,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(신용등급 7~10등급) (서비스 수혜인원 등이 기재되거나 추정 가능한) 물품 공급(용역)계약서, 사회서비스 의뢰서, 서비스 위탁관련 계약서·협약서 다만, '간병인 파견을 위한 환자의뢰서'/'간병신청서'(서비스 수혜자의 성명, 서명/날인이 기재)나 진료기록부(성명, 주민번호, 담당의사 등 서명/날인 기재)는 인정
----------	---

* 개인별로 확인가능 서류 중 택일

별지 2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

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

◆ 요건충족 계획

인증유형	사회적 목적 실현방법에 따른 인증 유형을 기준으로 작성 - 사회서비스제공형, 일자리제공형 등
조직형태	인증 시 조직형태 - 조직형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획 작성
근로자 고용계획	유급근로자 고용 및 복무관리 등 계획(정규직 00명 등)
사회적 목적 실현	취약계층 서비스제공, 일자리제공, 지역사회 공헌 등 구체적인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계획
의사결정 구조	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형성 계획 - 이사회, 운영위원회 등 운영 계획
정관·규약	정관·규약등 제개정 계획 - 상법상 회사의 경우에는 이윤 재투자 등 내용 포함

◆ 지속가능성 및 자립능력 확보 방안

- ▣ 영업수입의 확보를 위한 영업활동 계획 및 영업외수입의 확보 방안
- 위탁계약, 판로개척, 지원금 확보방안 등 구체적인 수입확보 방안을 작성
- ▣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등

◆ 단계별 세부추진계획

1단계 (0000.00부터~ 0000.00까지)	사업계획수립
2단계 (0000.00부터~ 0000.00까지)	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추진
3단계 (0000.00부터~ 0000.00까지)	미비한 요건에 대한 집중 관리
4단계 (0000.00부터~ 0000.00까지)	사회적기업 인증 신청

◆ 기타 인증 추진계획

연계기업, 기관 등 네트워크 형성계획을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작성

※ 필요시 별지작성

별지 3 사회적 목적 실현 확인서

사회적 목적 실현 확인서

증빙기간 : 20 . . . ~ 20 . . . ※ 농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일 직전 3개월 포함 필수

사회 서비스 제공	사회서비스 수혜대상자	구분	인원	가격		
		저소득자	명	천원		
		고령자	명	천원		
		장애인	명	천원		
		기타 취약계층	명	천원		
계	명	(A)	천원			
해당 기간 동안 기관의 총매출액(매출액 증빙 필요)			(B)	천원		
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(A ÷ B × 100)					%	

유급 근로자 고용	구분	남	여	계	
		나이			
	29세 이하	명	명	명	
	30~39세	명	명	명	
	40~54세	명	명	명	
	55세 이상	명	명	명	
	65세 이상	명	명	명	
	총고용인원	명	명	(A) 명	
취약계층 고용	취약계층	저소득자	명	명	명
		고령자	명	명	명
		장애인	명	명	명
		기타 취약계층	명	명	명
		취약계층 고용인원	명	명	(B) 명
고용 형태	정규직	명	명	명	
	비정규직	명	명	명	
취약계층 고용 비율 (B ÷ A × 100)				%	

지역 사회 공헌	지역주민 소득 증대, 지역 일자리 창출사업	예) 계약재배로 인한 소득증대, 농장 활용, 수익금 배당 사업 전후 일자리 증가 비교 등
	지역 자원 개발	예) 전통 한옥 개발, 체험 사업장 개소
	인적 자원 개발	예) 주민교육 등 역량강화 실적
	포상 및 홍보	예) 시장&군수 표창, 각종 기관 표창, 언론 홍보 실적
	기 타	기타 지역사회 공헌 실적

사회서비스를 제공받거나 고용중인 취약계층의 증빙서류	
[] 저 소득 자	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각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(세무서),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, 소득금액증명(국세청), 급여명세표 등
[] 고 령 자	주민등록번호(주민등록증·운전면허증 사본 등)
[] 장 애 인	장애인등록증,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진단서 등
[] 결 혼 이 민 자	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, 외국인등록증 상 F-2 또는 F-5
[] 청 년 / 여 성 실 업	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, 구직등록한 사람
[] 북 한 이 탈 주 민	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
[] 성 매 매 피 해	성매매피해여성 쉼터·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
[] 한 부 모 보 호	한부모가족 증명서(읍면동 발급)
[] 기 타	가족폭력 피해자, 갱생보호대상자, 범죄구조 피해자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상 취약계층

※ 필요시 별지작성

별지 4 농림축산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 신청서

농림축산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 신청서			
① 신청기업명			
② 연 락 처		③ 대표자명	
④ 소재지			
⑤ 조직형태		⑥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	
⑦ 지정번호	제 - 호	⑨ 지정일자	. .
⑩ 신청내용			
⑪ 신청사유	*필요시 별지 작성	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「농림축산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운영지침」에 따라 위와 같이 「농림축산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」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100px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농림축산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대표 (서명 또는 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font-size: 1.2em; font-weight: bold;">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</p>			
구비서류	변경신청 관련서류 일체		

농림축산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

지정번호 : 농식품형 제20 (연도) - (연번)호

기업명 :

지정유형 :

대표자 :

소재지 :

지정기간 : 20 . . . ~ 20 . . .

위 기업을 농림축산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
운영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
지정합니다.

20 년 월 일

농림축산식품부 장관 (인)

별지 7 농림축산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기관 현장조사표

농림축산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기관 현장조사표

총괄

신청기관명		대표자	
(주된 사무소) 소재지		전화번호 /FAX	
기관연혁			

사업내용

사업내용			
사업지역	○		
근로자	○		
수혜대상자	○		
근로조건	○근무시간 : 주 시간 ○평균임금 : 약 만원 일반근로자(~ 원), 임원(~ 원) ○건강보험 가입사실 확인		

□ 현장조사 내용

내 용	조사자 의견
① 유급 근로자 실제 참여여부 및 작업장 등 물리적 실제 여부	○
② 사회적 목적 관련 - 인증요건 관련(취약계층 근로자 고용여부, 서비스 수혜자 서비스 제공 여부 등) - 면담결과 사회적 목적 실현 의지	○
③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 결정구조 - 회의체 실질 가동여부 및 이해 관계자의 실제 참여 여부 등 * 인증시에만 해당	○ 정관을 통한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 내용 ○ 회의체 구성원 현황 ○ 회의 실시 현황
④ 기관의 지배구조 문제 - 이사회 등이 친인척 등으로만 구 성되어 있는지 여부, 주식 보유 구성 비율 등	○ 기관의 지배구조 확인
⑤ 모법인의 사업단의 실질적 독립 여부	○ 해당없음
⑥ 기관 대표자에 관한 사항 - 경력,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도, 경영 능력	○ 대표자의 주된 활동 및 경력 ○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(사회적 목적 실현 의지) ○ 경영 역량(인사·회계·노무 등 경영 전반과 관련)
⑦ 자립가능성에 대한 판단 - 수익창출 가능성, 사업의 특성 및 향후 발전 가능성, 지역사회(자치단체 등) 및 기업과의 실질적 연계 여부	○ 추진사업의 경영 환경 및 수익창출가능성, 지속가능성 ○ 지역사회 및기업과의 실질적 연계 여부

종합 검토 의견

이상의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.

20 년 월 일

확 인 자

기 관 명 :

성 명 :

(인)